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54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김 건·이헌승·서일준

안철수 · 김기웅 · 박상웅

유용원 · 조배숙 · 한지아

최수진 · 엄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일부가 중복되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에 따른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 제11조).

법률 제 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제8조제2항 중 "추진실적을"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을 "(동포교류진흥원의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동포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를 "초청·연수·교육·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센터장"을 "원장"으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센터장"을 "원장"으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2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u><신 설></u>	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u>차</u> . (생 략)	<u>카</u> . (현행 차목과 같음)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
가) ① (생 략)	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②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	
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u>추</u>	추
<u>진실적을</u> 재외동포청장에게 제	진실적 및 자체평가를 대통령
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	
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	<u><삭 제></u>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	
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	

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 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생략)

-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 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u>센터는</u>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u>초청·연수·교육·문화·홍</u> 보 사업
 - 2. ~ 4. (생 략)
 - ④ <u>센터는</u>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u>센터장</u>과 필요한 임직 원을 둔다.
 -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u>③</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동포교류진흥원의 설립
<u>등</u>) ①
동포교류진흥원(이하
<u> "진흥원"이라 한다)</u>
.
② <u>진흥원은</u>
③ <u>진흥원은</u>
1
<u>초청·연수·교육·문화</u>
O 4 (원레기 기호)
2. ~ 4. (현행과 같음)
④ <u>진흥원은</u>
<u>원장</u>
 ⑤ 진흥원
<u> শ্ৰম</u>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u>센</u><u>터</u>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①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있다.

⑥ <u>진</u>
<u>호</u> 원
⑦ <u>진흥원은</u>
,